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권덕철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
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지원기관이
긴급복지지원법 제2조,제8조,제13조의 위기상황확인, 현장확인,
사후조사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,
여권번호 등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(안 제9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. . ~ .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지원기관(법 제11조제1항의 “담당기구”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 확인에 관한 사무
2. 법 제8조에 따른 현장확인 및 지원에 관한 사무
3. 법 제13조에 따른 사후조사에 관한 사무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 신설 >	제9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지원기관(법 제11조제1항의 담당기관을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1. 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 확인에 관한 사무 2. 법 제8조에 따른 현장확인 및 지원에 관한 사무 3. 법 제13조에 따른 사후조사에 관한 사무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	
연락처	(044) 202-3064